

제조물책임법(PL법)이란?

제조물책임법(PL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 및 경제적인 책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중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과 가장 의문시될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PL법이란

PL법은 1999년 12월 16일 법률 제 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PL법은 결함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품에 결함이 있어 그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 등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PL법은 직접적인 피해자 구제가 아닌 제조업자 등이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 한층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PL법의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출하된 제품이다.

지금까지의 법률과 어떻게 다른지

종래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왔으나 민법의 규정에는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에 과실이 있었던 것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PL법에서는 제조업자 등의 과실여부 입증이 필요 없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또한, PL법에서는 책임을 지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조업자 등의 항변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래와 달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다.

제조물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지만 85년 EC지침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에서도 제정되는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운영되고 있어 국제 규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여년 전부터 소비자보호단체, 변호사 단체의 입법안 등이 발표된 적이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종래 민법에 의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에 PL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외국에 수출하는 국산품은 해당 국가의 PL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PL법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종래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되는 것, 또 하나의 변화는 책임을 지는 자 즉, 책임주체의 범위가 명확히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PL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소송이나 클레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자 등은 그 대응여하에 따라 미국에서처럼 도산의 염려도 우려되며 또 PL 대응을 위한 비용들은 제품원가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자신이 ① 제조·가공·수입한 ② 상품의 ③ 결함에 의해 ④ 타인의 ⑤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이다. 제조물책임의 최선의 방어책은 최고의 안전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자 등은 지금보다 한 층 더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 제조, 가공, 수입한 자가 책임을 지며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도 그 부품이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책임을 진다. 또 제조물을 판매한 자, 유통에 관여한 자 등은 제한적으로 PL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법상의 책임도 추궁된다.

PL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 포함)으로 그 상품의 취득이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묻지 않는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권한을 그 상품의 취득자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 점포의 고객 등 당해 상품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

우선 생각하여야 할 것은 자사 제품의 안전대책에 대한 노력이다. 설계, 제조, 표시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한 안전 대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사고발생에 대비한 대책으로서 사내 조직의 정비와 인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안전대책에 관한 기업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의 정비, 보관도 유효한 대책이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정비도 중요하며 하도급기업의 경우는 원청기업과의 책임분담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놓는 방법, 특히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 질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하여 두는 것이 유효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⑬